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2. 개정이유
 ○ 성주군의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출산가정에 양육지원금
 ○ 확대를 통해 출산·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
3. 주요내용
 ○ 양육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간 개정(안 제5조제1항제4호)
 - 양육 지원 대상 확대(영아→영유아)
 - 양육 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(12개월→36개월)
4. 참고사항
 ○ 관계법령 :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, 제10조,
 ○ 예산조치 : 1,335,000천원(군비 100%)
 ☞ 1,335,000천원 [738,600(예산) + 596,400(2020년 1차 추경)]
 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[기획감사실-11031(2019.11.1.)]
 ○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[가족지원과-44562(2019.10.30.)]
 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9. 11. 5. ~ 11. 25.)
5. 검토의견
 ○ 본 개정 조례안은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출산가정에 양육지원금 확대를 통한 출산·양육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이며
 ○ 양육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금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
 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,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변경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나, 다만,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및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, 출산가정에 대한 단편적인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보육·고용·주거 등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·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, 군민의 출산 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 증가 시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